

의안번호	제2850호
의 결	2024.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발 의 자	정영환 의원
발의연월일	2024. 11. 8.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정영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50
----------	------

발의연월일 : 2024. 11. 8.

발 의 자 : 정영환 의원(1인)

찬 성 자 : 허옥희, 김석한, 김향숙,
김원순, 김희태 의원
(5인)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예방교육과 홍보 및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49호

- 예고기간: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8. (생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